

## 『2급 소방안전관리자』선임기준 및 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대상물 기준	<p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"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라 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[호스릴(Hose Reel)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]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</li> <li>2.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·취급하는 시설</li> <li>3. 지하구</li> <li>4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</li> <li>5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</li> </ol> <p>※ 근거 :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</p>
선임자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사·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·건축기사·건축산업기사·일반기계기사·전기기능장·전기기사·전기산업기사·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2.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3.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「광산보안법」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(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)으로 선임된 사람</li> <li>4.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</li> <li>나.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</li> </ul> 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『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』 제3조(소방관련학과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소방안전관리학과(소방안전관리과, 소방시스템과, 소방학과, 소방환경관리과,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2. 전기공학과(전기과, 전기설비과, 전자공학과, 전기전자과, 전기전자공학과,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3. 산업안전공학과(산업안전과, 산업공학과, 안전공학과,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기계공학과(기계과, 기계학과, 기계설계학과, 기계설계공학과,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5. 건축공학과(건축과, 건축학과, 건축설비학과,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6. 화학공학과(공업화학과,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)</li> <li>7.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</li> </ol> </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.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라.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

	<p>마. 군부대(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)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바.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사.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아.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자.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,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</p> <p>차.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</p> <p>카.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,1급,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타. 2년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6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</p> <p>※ 근거 : 시행령 제23조제3항</p>
<p><b>선임방법</b></p>	<p>선임신고 근거 : 시행규칙 제14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</p> <p>⇒ 협회사이트 교육정보&gt;실무(선임자)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</p>
<p><b>실무 (선임자) 교육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,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(시행규칙 제36조2항)</li> <li>•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</li> </ul> <p>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(시행규칙 제40조)</p>